

대구예술대학교 총학생회회칙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구예술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창조적 진리 탐구와 진정한 대학문화를 정립하여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능력배양에 힘써서 예술인으로 거듭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회는 대구예술대학교 학내에 둔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구예술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한다(단, 휴학 및 징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활동 전반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학생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단 회원의 10%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가 있어야 한다).

③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단, 학생회비 미납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④ 회원은 징계에 관한 경우 해당 학생이 자기를 위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6조 (자문위원회) 본회는 운영과 학생자치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교 교수 및 관계자로 구성된 학생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7조 (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총대의원회, 총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운영위원회, 집행부로 구성한다.

제8조 (학교당국과 협의)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당국과의 협의조정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학생총회

제9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사 반영결정기구이다.

제10조 (구성) ① 학생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이하 총회라 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단,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1조 (권한) 총회는 모든 회원에게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받는다.

제12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 종강 전 4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학생 전체에 관련된 모든 사항과 의사수령을 위하여 대의원회 및 운영위

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10%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이를 일주일 이내에 소집한다(단,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3. 임시총회의 소집은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단, 제2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의결) 회원 40%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1. 총회의 안건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회원은 학생총회 결정사항에 대해 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3. 개최 및 의결정족수는 총대의원회에서 확인한다.

제 3 장 총대의원회

제14조 (지위) 총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5조 (구성) 총대의원회는 본회의 각 전공, 학년별 재학생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전공 대표로 구성한다(단 총학생회 운영위원과 집행부 임원은 겸임할 수 없다. 2학기이상 수료한다)

제16조 (의장단) ①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지원자들에 한하여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2학기 이상 4학기 이하 수료한 자)

② 의장은 총학생회의 회장, 부회장의 불신임 의결로 궐위되는 동안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7조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총대의원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2. 집행위원회는 총대의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 기획부, 복지부, 총무부를 두고 업무분장은 내규로 정한다(2학기 이상 수료한자)
3. 집행위원회는 대의원 의장단이 합의하에 각 학과 대의원으로 부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업무 및 권한)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회칙 개정안의 발의 의결권
2.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의 승인권
3.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 결산의 심의 승인권
4. 학생총회 개최 요구권
5. 총학생회 집행부 각 부장 임명 동의권
6.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안 제출 요구권
7. 학생자치회비 및 회원에게 재정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권
8. 운영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권
9. 감사 결과 부정 발견 시 해당학과에 전체 모임을 소집 공청회 후 투표를 통하여 사고금액을 변상 조치하여 그 금액을 학회로 환원하여 학회 기금으로 조성된다.
10. 집행부 각 부장에 대한 해임 요구권

11. 학생회장 및 부회장, 동아리연합회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

12.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제19조 (소집)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제적대의원 5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학생회장,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 회의 소집은 4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단, 전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의결)

1.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18조에 대하여 제1, 10, 11, 12항에 대하여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기타 언급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1조 (상임위원회)

1. 대의원회 상설기구로 상임위원회를 둔다.

2. 상임위원회는 대의원회 의장과 각 학과별 대의원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3.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겸임한다.

제22조 (상임위원회 업무 및 권한)

1. 대의원회 임시 총회 소집 요구권

2. 대의원회 제반 업무 관장권

3. 제27조 제6항의 사전 동의권

4. 가예산 및 경정예산에 대한 사전 동의권

5. 본회의 경리 및 회계 감사권

6. 감사 결과 대의원회에 상정권

7. 집행부 각 부장의 재임명 동의권

8. 상임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대의원회 위임안건 처리권

10. 대의원회 각 부장 임명 동의권

제23조 (상임위원회 의결) 상임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제24조 (지위) 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여 학생총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집행부회의 의장이 된다.

제25조 (부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의 궐위시 그 직을 승계한다.

제26조 (선출)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27조 (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총회를 소집한다.
2. 집행부 각 부장을 추천하여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3. 대의원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주관한다.
5. 학생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및 결산을 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6. 대의원회에 제출되어 승인된 사업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계획 추진할 수 있다.(단, 이 경우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
7. 대의원회에서 승인된 예산, 결산안을 전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8. 본회 회원의 중의를 대표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복지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을 학교 당국에 건의할 수 있다.
9.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탄핵 학칙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신분이 보장된다.
10. 집행부의 각 부장을 해임하고 대의원회 동의를 거쳐 새로 임명할 수 있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28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최고의 운영기구이다.

제29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집행부의 각 부장, 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한다.

제30조 (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비를 책정하여 대의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승인을 받는다.
2. 본회의 제반 사업을 심의, 조정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3. 본회의 전체 예산을 조정, 심의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4. 결산보고서를 심의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5. 대의원회 소집 요구권
6. 회칙개정 발의권
7. 집행부의 업무진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조정, 심의한다.
8.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9.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 의결권

제31조 (소집)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1. 정기회의는 월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임시회의는 학생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5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32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6 장 집행부

제33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34조 (구성) ① 집행부는 학생회장이 임명한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각 부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1인의 차장을 둘 수 있다.

제35조 (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 각 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2. 학생회의 사업계획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활동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4. 집행부는 제반활동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 가. 총무부 : 본회의 사무, 회계, 각종회의 개최 및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제반 업무
 - 나. 기획부 : 본회의 기획, 조정에 관한 제반 업무
 - 다. 정책부 : 본회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라. 학술부 : 본회의 문화, 학술활동과 각종 자료의 조사 및 홍보에 대한 제반 업무
 - 마. 복지부 : 본회의 복지에 대한 제반 업무
 - 바. 여학부 : 여학생 활동에 관한 업무

제 7 장 동아리 연합회

제36조 (구성) 동아리 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로 구성한다.

제37조 (회장) 동아리 연합회의 정·부회장은 동아리 연합회 선거제칙에 따라 선출되며 회장은 동아리 연합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이 된다.

제38조 (업무 및 권한) 동아리 연합회 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39조 (기구) ① 동아리 연합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단, 3개 부서 이내로 둔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아리 연합회 회칙에 따른다.

제 8 장 재정

제40조 (회비 및 관리) ① 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제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본회의 제반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학생회비의 징수 및 관리는 학교에서 담당하되, 학생회장의 적법절차에 의한 요구가 있을 시에 지출한다.

③ 학생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할 수 있다.

제4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1년으로 한다.

제42조 (예산의 편성 및 심의) ① 예산은 학생회 각 기구에서 편성, 조정하며 대의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② 심의 확정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할 시에는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3조 (가예산과 경정예산)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이 통과되지 아니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학기당 예산의 30%까지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예산 수립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과된 예산에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경정예산은 총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예산집행)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경비에 대한 일체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각 기구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경비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제45조 (결산보고) ① 결산보고는 제1기와 제2기로 구분한다.

② 결산안은 학생회의 각 기구에서 보고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작성하여 차기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에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 (회계감사) 대의원회 감사부장과 대의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 대의원회는 각 기구에 대해 매 학기말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2. 전 항의 감사에 총대의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 당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3. 감사 결과는 학교 신문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선거

제47조 (선거권) 선거권은 본회의 회원에 한한다.

제48조 (피선거권) ①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대의원회 의장은 각 호 규정에 해당하는 회원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대의원회 의장은 우리 대학교 4학기 이상 6학기 미만의 등록을 필한 자
2. 부학생회장은 6학기 미만의 등록을 필한 자
3. 형사 및 학사 징계(근신, 무기정학, 유기정학, 제적)받은 사실이 없는자
4.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B) 이상인 자

②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대의원회의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제49조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본회 회원의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공동 입후보하며 직접선거에 의한 최다득표자로 한다. 단, 단독 입후보 시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재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시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제50조 (대의원 의장)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의 직접선거에 의한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된다. 단, 1차,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 득표자 2인을 3차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로 한다.

제51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은 각 전공별대표1인으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 호선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선거에 대한 이의는 선거 후 일주일 이내에 접수실에서 처리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은 모든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52조 (선거시기)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대의원회의장, 전공대표 및 대의원선거는 신임기년도 전년의 11월중에 실시한다. 단, 졸업준비위원 선거는 당해 연도 3월중에 선출한다.

제53조 (선거방법)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제54조 (보궐선거) ① 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잔임기간이 150일 이상일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기간이 150일 미만일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대의원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③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이 탄핵 또는 기타 사유로 양인이 궐위 시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5조 (선거 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 10 장 졸업준비위원회

제56조 (구성) 졸업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졸업준비위원회는 각 전공 4학년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제57조 (구성시기) 졸업준비위원회의 구성은 3월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제58조 (선출방법) ① 졸업준비위원장은 졸업준비위원 중 호선한다.

② 졸업준비위원장 선거는 학생회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59조 (업무 및 권한)

1. 졸업준비에 관한 제반 업무 관장

2.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졸업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졸업준비위원회는 11월말까지 졸업준비 업무를 마치고 대의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1 장 회칙개정

제60조 (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2. 운영위원회의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

3.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제61조 (공고) 제6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의된 회칙개정안을 대의원회 의장은 즉시 공고하여야 하며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62조 (심의 및 결의) 회칙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7일 이후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하며,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3조 (공포) 학생회장은 개정된 회칙을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단, 학생회장이 4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시에는 대의원회 의장이 대신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7년 3월 3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7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